

2024년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0일

궁능유적본부장

1. 최종 합격자 명단

직종	응시분야	응시번호	성명
공무직	시설물관리원 다급	관리-04	최 ○ ○

※ 예비합격자 : 관리-02 신 ○ ○

2.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

가. 최종 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종대왕유적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기한 : 2024. 6. 14.(금) 17:00까지
- 제출장소 :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층(사무실)
- 제출서류
 - 채용신체검사서(2년 이내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) 1부
 - 주민등록등본·초본 각 1부 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
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[붙임1 서식]
 -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[붙임2 서식]

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[붙임3 서식]
- 반명합판 사진 1매, 통장 사본 1부, 도장
- ※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사본 각 1부

3. 기타사항

- 가. 제출기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합격은 자동적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다음의 경우 합격 통보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발견 시
 -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결격사유 확인 시
- 다.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(031-880-4703)로 연락 바랍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
2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
3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 끝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 채용 및 인사업무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4년 6월 일

대상자 본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4년 6월 일
 생년월일 . . . 지원자 (서명)
 년 월 일

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장 귀하